

③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05. 11.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11. 21
- 다. 의안번호 : 제2005 - 63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창작스튜디오는 거창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하며, 필요시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창작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재료비등 실비만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함(안 제9조)

○ 수탁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가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또는 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의 취소 근거를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예술창작스튜디오는 폐교된 가조 석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이용하려는 것으로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사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학교 용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2005.5.27 계약기간 3년, 연간 대부료 2,814,300원으로 대부계약 체결한 것으로 당초 무상으로 계약 체결 방침이 교육청의 자체 감사에 의해 유상대부로 변환된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 관내 학교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대부계약 체결 협상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안 제7조의 내용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교육청과의

계약기간 체결시점과 공사준공 시점까지는 차이가 있으므로 최초 위탁기간 설정시는 3년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대하여 예외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특별권력 관계가 아닌 평등의 위치에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계약평등의 원칙인 민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검토됨.

-타 자치단체의 유사조례에서도 계약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동 시설은 상시 관리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것이므로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안 제10조의 위탁자의 의무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2조의 위탁취소 조항 중 시설소유자인 거창군교육청과의 대부계약 체결이 사정에 의거 연장되지 못할 경우에도 위탁계약을 취소해야 하므로 제1항 내용중에 “거창군교육청과의 대부계약이 해지된 때”를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기타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5조

5. 참고자료

文化藝術振興法

第3條 (施策과 勸獎)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고, 國民의 文化藝術活動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財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振興施策은 國民生活의 質的 향상을 위한 健全生活文化의 開發·普及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文化藝術機關 및 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과 計劃의 施行에 관하여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關聯機關 및 團體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5호]

第9條 (文化藝術空間의 設置勸獎)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活動을 振興시키고 國民들의 보다 높은 文化享受機會를 확대하기 위하여 文化施設을 設置하고 이용되도록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文化施設을 設置하도록 勸獎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施設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文化施設의 관리를 非營利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신설 2000.1.12>

지방자치법

第135條 (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